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영책임자등’ 의 정의 구체화 등〉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31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 관	2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구체화	11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명확화	16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및 법인의 벌금 수준 완화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이에,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

수준을 완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주요 인명사고를 뜻하는 중대재해를 다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사업주 등의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등
제3장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등
제4장	보 칙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심리절차의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 등

○ 동법의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란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이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함.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

중대산업재해 (법 제2조제2호)	중대시민재해 (법 제2조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¹⁾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다만, 중대산업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 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가 10명 이상 발생

○ 동법의 주요 수범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임.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동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됨.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법률로는 이 법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²⁾
-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³⁾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원인조사 등을 규정하고 법 위반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⁴⁾. 그러나 그 형사처벌은 주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루어지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2) 그 외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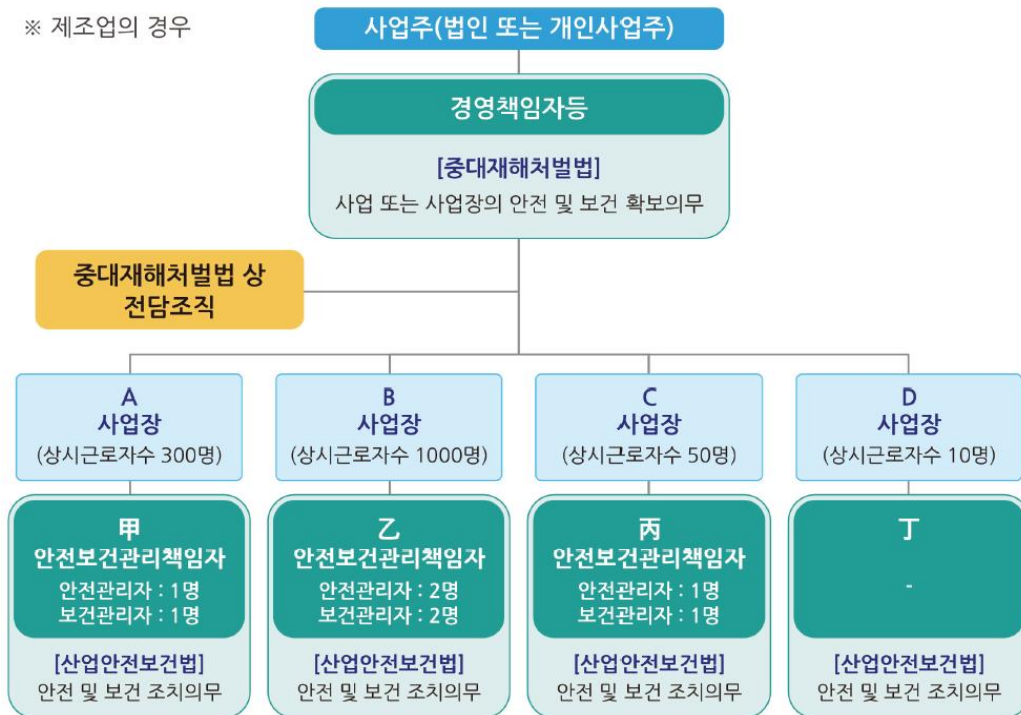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예: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68조제2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175조제2항제2호).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70조제2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중대 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계 등 >

※ 제조업의 경우



- 또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대상으로 ‘중대 재해’를 규정하는 반면,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개념상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부상·질병의 개념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음.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개념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발생	1명 이상 발생
부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질병 등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쟁점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처벌조건이 되는 수범자의 범위와 안전의무에 대한 법적 명확성 여부, 처벌수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결정이 존재함.⁵⁾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긍정하는 결정⁶⁾에서는 ① 법 제4조 제1항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② 법 제5조는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관해 높은 수준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③ 법 제6조제1항은 재해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하청 근로자보다 사업주나 원청에 더 중한 처벌을 하여 책임주의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임.
-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결정⁷⁾에서는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의미는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동법의 입법

5) 정현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6)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2024초기2230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7)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2022초기1795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

취지 및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법 제6조제2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해당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동법의 입법취지와 처벌요건에서 ‘고의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처벌 수준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구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u>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u> 나. (생략)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 ----- <u>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u> 나.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경영책임자등”이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을 지는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미함.

“경영책임자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있음(법 제2조제9호).⁸⁾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해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⁹⁾

실무적으로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과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 중 안전 담당 직책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며, 최고안전책임자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2.

(Chief Safety¹⁰⁾ Officer; CSO)라는 명칭도 사용됨.

- 다만,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르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총괄관리 및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¹¹⁾

- 안 제2조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경영책임자등이 이 법의 주요 수범자임을 고려할 때, 안 제2조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가능성 및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안 제2조와 같이 규정할 경우 안전보건 관련 권한 및 책임의 형식적인 위임 사실만으로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이 면제

10) “Security”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11) 고용노동부, 앞의 글, 23.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¹²⁾ 중대재해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산업 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현행법 문언에 대해서도 CSO 등을 둔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쟁점이 존재함. ①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표이사 면책부정설, ② ‘또는’이라는 규정 문언의 의미와 처벌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는 대표이사 완전면책설, ③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를 고려하여 양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 판단설 등의 논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해설서 및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례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정현희, 앞의 책, 41-42.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이 기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행법보다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기업 내 권한과 역할에 따라 처벌하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공범 규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명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안 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제5조를 삭제하여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호의 조치, 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및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	<삭 제>

<u>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제6조·제7조),¹³⁾ 현행법 제4조와 제5조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현행법 제4조는 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현행법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체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¹⁴⁾ 그 범위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¹⁵⁾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¹⁶⁾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고용노동부 해설서) >

법령명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광산안전법	법률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의 의무(법 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7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 제11 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 규율
원자력안전법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법 제59조의2), 방사선 장해방지조치(법 제91조) 등
항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 행령 별표1)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 행령 별표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법 제9조), 안전점검(법 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 시(법 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의 보호 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해 진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조항(법 제36조)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선원법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 제82조), 의사의 승무(법 제84조) 등 규정을 포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 제14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등을 규정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
다.

15)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별칙해설」, 2022, 219.

16) 고용노동부, 앞의 글, 104.

○ 안 제4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전부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경우 동법 제9조제2항제4호 상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¹⁷⁾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제5조는 용역, 도급, 위탁 등을 행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에게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도급 등을 행한 사업주 등에게 적극적인 안전경영을 주문하려는 것임.¹⁸⁾

17)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¹⁹⁾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에 ‘도급’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고용노동부 지침 등의 해석을 참고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의 의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등²⁰⁾ 그 책임범위가 모호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이해됨.

○ 다만, 현행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고용노동부 및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현행법 제5조를 제4조의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²¹⁾²²⁾ 도급 관계에 대해 현행법 제5조를 적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²³⁾이 있어 현행법 제5조가 실제 판결에 적용되고 있다는

18) 전상수·임재금·백상준·류호연,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입법론」, 박영사 (2025), 327.

19) 고용노동부, 앞의 책, 108.

20) 대검찰청, 앞의 책, 233-244.

21) 고용노동부, 앞의 책, 108.

22) 대검찰청, 앞의 책, 233.

23) 법원은 도급인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한 바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점, 당초 도급 등의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4조 등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현행법 제4조는 법 시행 이후 법령 해석 등이 정립되어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제5조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장비·장소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행법 제5조를 삭제하기보다는 법조문의 개정이나 시행령에서의 구체화를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및 범인의 벌금 수준 완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범인의 벌금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u>1년 이상의 징역</u> 또는 <u>10억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 ----- ----- ----- <u>7년 이하</u> ----- -- <u>1억원 이하</u> ----- -- . -----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u>7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1억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 ----- ----- ----- <u>5</u> <u>년</u> ----- <u>5천만원</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	-----
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	-----
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	-----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조제1항의 경우: <u>50억원</u>	1. ----- <u>10억원</u>
이하의 벌금	-----
2. 제6조제2항의 경우: <u>10억원</u>	2. ----- <u>1억원</u>
이하의 벌금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현행법 제7조는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으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전·보건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의 법정형 >

구분	적용법조	기본
산업재해치사 (제6조제1항)	법 제6조제1항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5년 이내 재범시 1/2 가중)
	법 제7조제1호(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치상 (제6조제2항)	법 제6조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시 1/2 가중)
	법 제7조제2호(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동법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제정 당시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법정형의 수준에 대하여 과도한 법정형의 설정이 오히려 규범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의견과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유의미한 형사처벌이 빠지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²⁴⁾

24) 제38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2020.12.24., 26면.

이에 자유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되 벌금형에는 상한을 두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동 규정과 관련하여 형벌체계상 적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입장과 동법의 제제로써의 실효성을 근거로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함.²⁵⁾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제6조제1항을 하한제한형에서 상한제한형으로 하고 법정형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책임주의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²⁶⁾ 유사한 유형의 과실범 내지 안전의무 위반범에 대한 법정형 및 엄격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5) 전현욱 등 11인,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12., 166-170.

26) 헌재 1997. 7. 16. 95헌바2등

< 유사 범죄의 법정형 >

법률명	죄명	법정형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치사상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참고로 동법의 양형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나, 2024년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1심 기준) 3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이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2년 수준으로 나타남.²⁷⁾²⁸⁾

27)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2022고합95)은 원청대표 징역 1년, 제15호 판결(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제20호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제26호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은 원청대표 징역 2년이 선고됨.

28) 다만, 2025년 9월 23일 선고된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23, 2025고합24(병합), 529(병합))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음.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동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까지도 엄중히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하여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